

(參 照)

1. 제안이유

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－ 공유재산취득 : 건물신축 3건의 3동 3,898.71㎡
- － 공유재산매각 : 1건의 1필지 7㎡

〈재 산 표 시〉

구 분	소 재 지	면 적(㎡)	재산가액(천원)	비 고
취 득 (건 물 신 축)	괴정동 404-2번지	1,712.93	998,712	괴 정 3 동 사
	구평동 159-1외 5필지	835.78	466,000	구 평 동 사
	신평동 651-9번지	1,350	1,347,992	수 영 장
처 분(매각)	괴정동 421-10번지	7	4,900	대 지

3. 검토의견

공유재산취득 신축건물 3건은 괴정3동사, 구평동사 및 신평레포츠공원 내의 실내수영장으로서 공용 및 공공용물로 사용될 것이고 매각재산인 괴정동 421-10번지의 대지 7㎡는 신청인 이영화의 건물 담장내에 위치한 소규모 토지로서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가치가 별로 없고 건축대지면적 최소한도(일반주거지역 60㎡이상)에 미달하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2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처리코자 하는 것이므로 동의함이 가하다고 사료됨.